

웅지세무대학교	직 제 규 정	문서번호	3-3-12(F)-0
		제정일자	20.11.30
		최근개정	-
		주 관 처	기획처
		관리부서	-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기획처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74조 내지 제76와 「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9조 내지 제9조의2 및 제84조에서 정한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직제는 법령·정관 및 학칙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사무분장) ① 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부서별 사무분장은 「사무분장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
② 정관 제75조 및 학칙 제84조의 부속시설(부속기관)은 업무분장은 각 부속기관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설치부서)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설치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기획처
2. 교학처
3. 사무처
4. 대외협력처
5. 학부(과)
6. 부속기관
7. 부설기관

제5조(일반직원의 정원) 대학에 소속된 일반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의 정원은 상위법령 [별표1]에 따른다.

제3장 구성원

- 제6조(교직원)** ① 대학에 대학의 장과 교원 및 직원을 둔다.
- ② 교원은 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강사 및 조교로 한다.
- ③ 직원은 일반직·기술직·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직계별 구분은 [별표1]과 같다.
- ④ 제2항의 정관 및 학칙에 따라 교원 이외 초빙 및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
- ⑤ 대학의 장은 제3항의 일반직·기술직·기능직에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으며, 「직원인사규정」에 따라 계약연장 및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.
- ⑥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학의 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인사규정 따라 정년을 초과한 촉탁직과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직 및 일용직을 둘 수 있다.
- ⑦ 일반직계의 대학 내 직급에 따른 직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1. 5급 이상 : 부장
 2. 6급 : 과장
 3. 7급 : 계장
 4. 8급 : 주임
 5. 9급 : 담당
 6. 보직이나 특별하게 직함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직함으로 호칭한다.

제4장 대학기구

- 제7조(총장 및 부총장)** ① 정관 제73조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.
-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- ③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.
-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비서실을 둔다.

- 제8조(각 처의 설치)** ① 대학에 기획처, 교학처, 사무처, 대외협력처를 둔다.

- ② 교학처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1. 교무팀
 2. 입학홍보실
 3. 학생지원실
- ③ 사무처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1. 총무팀
 2. 회계팀
 3. 시설팀
 4. 전산팀

제9조(각 처의 장)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0조(학부(과)) 각 학부(과)에 학부(과)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(부속기관) ①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.

1. 학보사
2. 도서관
3. 생활관
4. 경영경제연구소
5. 성희롱상담소
6. 학생상담센터
7. 교수학습센터
8. NCS지원센터
9. 현장실습지원센터
10. 취·창업지원센터

② 부속기관의 장의 자격과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속기관별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부설기관) ① 대학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
2. 평생교육원

② 부설기관의 장의 자격과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설기관별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1판-제정 2020.11.30.> <시행/공포 2020.12.0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일반직정원표

학 교 일 반 직 정 원

총 계	81인
일반직계	65인
2급 (참 여)	2명
3급 (부 참 여)	2명
4급 (참 사)	2명
5급 (부 참 사)	6명
6급 (주 사)	8명
7급 (부 주 사)	10명
8급 (서 기)	15명
9급 (부 서 기)	20명
기술직계	2명
5급 (사서부참사)	1명
9급 (사 서 보)	1명
기능직계	14명
8등급계	2명
운전기사	2명
9등급계	6명
건축기사보	2명
전기기사보	2명
수도기사보	2명
10등급계	6명
경노무원	6명